

남양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13
----------	-----

제 출 일 : 2025. 5. 30.

제 출 자 : 남양주시장

1. 제안이유

- 출자·출연기관 운영 관련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부서별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여 공공기관의 관리·지원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총괄부서 및 주무부서의 업무 범위 규정
- 기관 운영의 관리·지원 기능 강화
 - 정관 제·개정 협의, 임직원 보수 결정 관련 규정 신설 및 성과계약 평가에 관한 사항 구체적 명시
 - 대행사업 비용 정산 규정 신설
 - 기구, 정원 변동 등 중요 규정 제·개정 사항 사전협의 규정 신설
-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 부서협의결과
 - 1) 협의기간 : 2025. 3. 26. ~ 2025. 3. 27.
 - 2) 협의결과
 - 비용추계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규제심사 : 해당없음
- 입법예고 결과
 - 1) 예고기간 : 2025. 4. 3. ~ 2025. 4. 23.(20일간)
 - 2) 예고결과 : 의견없음

남양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출연 기관”이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출자·출연 기관의 제도 운영, 출자·출연 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운영, 성과계약 이행실적 및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주무부서”란 소관 출자·출연 기관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지도·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시장”이라”를 ““시장”이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따른 심의위원회”를 “따라 남양주시의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임명 또는 위촉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서(이하 “총괄 부서”라 한다)”를 “부서”로 한다.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6조 및 제7조로 하며, 제5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정관 협의 등) ① 시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임직원의 보수)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반영한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 및 임금인상률 등을 결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을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종전의 제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성과계약 체결 및 성과계약서의 작성은 주무부서의 장이 담당하되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하며,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는 총괄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제9조(종전의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출자·출연기관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대행 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10조(중전의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주무부서의 장은 소관 출자·출연 기관의 사무를 총괄 지도·감독한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사전에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주무부서의 장은 이를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중전의 제1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련하여”를 “관련하여 조례로”로 한다.

제13조(중전의 제11조) 제2항 전단 중 “성과”를 “성과계약 이행실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성과계약”을 “성과계약 이행실적”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성과”를 “성과계약 이행실적”으로 한다.

제14조(중전의 제12조)제1항 중 “요청하여”를 “요청하여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관·과		예산과
입안자	관·과장 직위·성명	예산과장 안병찬
	팀장 직위·성명	공기업관리팀장 장용규
	담당자 성명·전화	김석호 (031-590-2845)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출연 기관”이란 남양주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출연 기관”이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출자·출연 기관의 제도 운영,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운영, 성과계약 이행실적 및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주무부서”란 소관 출자·출연 기관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지도·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 위원회 구성·운영)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 위원회 구성·운영) ① ----- ----- “시장”이라 -----

법 제6조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략)

③ 시장은 영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해임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남양주시의회에 위원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출자·출연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의 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2. (생략)

<신설>

-----.

② (현행과 같음)

③ -----
-- 따라 남양주시의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임명 또는 위촉된

-----.

④ -----
----- 부서-----

-----.

1.·2. (현행과 같음)

제5조(정관 협의 등) ① 시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류

제5조 (생략)

제6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 ⑤ (생략)
⑥ 성과계약 체결 시 성과계약서의 작성은 사전에 총괄부서의 장의 협조를 받아 주무부서의 장(소관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지도·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이 한다.

<신설>

제7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 ② (생략)

<신설>

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현행 제5조와 같음)

제7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성과계약 체결 및 성과계약서의 작성은 주무부서의 장이 담당하되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하며,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는 총괄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제8조(임직원의 보수)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반영한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 및 임금인상률 등을 결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을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출자·출연기관이 법 제21조

제8조(지도·감독) (생략)

<신설>

<신설>

제9조 (생략)

제10조(경영실적 평가 등) ① ~

④ (생략)

⑤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정하
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제11조(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① (생략)

② 경영평가단은 성과 평가, 경
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실
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출연

제1항에 따른 대행 사업을 종료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비용을 정
산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① (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주무부서의 장은 소관 출자·
출연 기관의 사무를 총괄 지도·
감독한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
는 사항을 사전에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주무부
서의 장은 이를 총괄부서의 장
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 (현행 제9조와 같음)

제12조(경영실적 평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관련하여 조례
로 -----.

1. ~ 4. (현행과 같음)

제13조(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성과계약 이행
실적 -----

기관에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
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
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
다.

③ 경영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완료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
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
다.

④ (생략)

⑤ 경영평가단은 해당 성과 평
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
의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
산된 것으로 본다.

제12조(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① 시장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말까
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요청하여 한다.

② (생략)

제13조·제14조 (생략)

-----.

--.

③ -----
성과계약 이행실적 -----

--.

④ (현행과 같음)

⑤ ----- 성과계약
이행실적 -----

-----.

제14조(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① -----

요청하여야 --.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제16조 (현행 제13조 및
제14조와 같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 수반 요인 및 관련조문

본 조례 개정안은 남양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효율적인 관리·지원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으로 추가 재정을 수반하는 요인이 없음.

2. 미 첨부 근거 규정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

3. 미 첨부 사유

기관 운영의 부서별 업무 범위 규정과 주요 업무 사전협의 사항 명시 등과 같은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조례 개정 시 예상되는 별도의 비용 발생 요인이 없음.

4. 작성자

기획조정실 예산과장 안병찬

붙임2 성별영향평가 결과

- 오늘과 내일을 잇는 미래도시 남양주 -



남 양 주 시



수신 예산과장

(경유)

제목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2025A경기남양032)

1. 예산과-3063(2025. 3. 25.)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제출한 「남양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붙임 검토의견 통보서(2025A경기남양032) 1부. 끝.

남 양 주 시 장

주무관	이연희	여성정책팀장	홍주희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복지국장	전결 2025. 3. 26. 양현모
협조자							
시행	여성아동과-11447	(2025. 3. 27.)		접수	예산과-3133	(2025. 3. 27.)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별관4층 (금곡동)			/ http://www.nyj.go.kr		
전화번호	031-590-3965	팩스번호	031-590-2269	/ yhlee0127@korea.kr		/ 비공개(5)	

- 정약용의 상상을 깨우는 남양주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5A경기남양032			
정 책 명	남양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부서명	예산과		
	담당자명	김석호	전화번호	031-590-2845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5년 3월 25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예산과)	○ 출자·출연 기관의 효율적인 관리·지원 체계 개선 ○ 부서별 업무 범위 규정, 기관 운영의 관리·감독 강화 및 조례 용어 정비 등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남양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5년 03월 26일

남양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이연희/031-590-3965)

예산과장 귀하

붙임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오늘과 내일을 잇는 미래도시 남양주 -



남 양 주 시



수신 예산과장

(경유)

제목 부패영향평가 결과 알림(2025-34)

예산과-3064(2025.3.25.)호와 관련하여 「남양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평가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관련 권고사항 반영 여부

■ 평 가 결 과 : **원안동의**

붙임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각 1부. 끝.

감 사 관

주무관	김주현	청렴윤리팀	장	이정주	감사관	문경석	2025. 3. 27.
협조자							
시행	감사관-3396	(2025. 3. 27.)	접수	예산과-3139	(2025. 3. 27.)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금곡동)			/ http://www.nyj.go.kr		
전화번호	031-590-4719	팩스번호	031-590-2079	/ sjh99006@korea.kr		/ 비공개(5)	

- 정약용의 상상을 깨우는 남양주 -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 리 번 호	2025-남양주-34		
자 치 법 규 명	남양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평 가 담 당 부 서	감사관	평 가 담 당 자 직 급 및 성 명	행정7급 김주현
입 안 부 서	예산과	입 안 담 당 자 직 급 및 성 명	행정8급 김석호
평 가 결 과 통 지 과 일	2025. 3. 27.		
통 보 내 역	원 안 동 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2025년 3월 27일 부패영향평가 평가담당 감사관 (담당자 / 연락처 : 김주현 / 031-590-4719) 예산과장 귀하			

붙임4 규제심사 결과

- 오늘과 내일을 잇는 미래도시 남양주 -



남 양 주 시



수신 예산과장

(경유)

제목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결과(「남양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1. 남양주시 예산과-3064(2025. 3. 25.)호와 관련됩니다.
2. 「남양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결과, 해당 개정안은 우리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함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 또는 출연기관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3.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에, 「남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규제심사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규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

끝.

의 회 법 무 과 장

주무관

조현기

규제개혁팀장

안재현

의회법무과장

양기영

2025. 3. 26.

협조자

시행 의회법무과-3830

(2025. 3. 26.)

접수 예산과-3109

(2025. 3. 26.)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금곡동)

/ <http://www.nyj.go.kr>

전화번호 031-590-7320

팩스번호 031-590-2900

/ hgj1235@korea.kr

/비공개(5)

- 정약용의 상상을 깨우는 남양주 -

붙임5 입법예고 결과보고

- 오늘과 내일을 잇는 미래도시 남양주 -



남 양 주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남양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결과보고

1. 예산과-3302(2025. 4. 2.)호와 관련입니다.
2. 「남양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남양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2025. 4. 3. ~ 2025. 4. 23.(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시보,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의견제출 0건

마. 향후계획: 제506회 조례·규칙심의회 상정(2025. 5.)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주무관	김석호	공기업관리팀장	장용규	예산과장	안병찬	기획조정실장	전결 2025. 4. 25. 구형서
협조자	의회법무팀장	김설	의회법무과장	양기영			
시행	예산과-4202			접수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금곡동)				/ http://www.nyj.go.kr	
전화번호	031-590-2845	팩스번호	031-590-2059	/ tdbfla@korea.kr		/ 대국민 공개	

- 정약용의 상상을 깨우는 남양주 -